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배 포	2019.5.2.(목)
식품의약품안전처 / 농림축산식품부		식약처	현지실사과 한운섭 과 장(☎043-719-6201) 최충렬 사무관(☎043-719-6202)
		농식품부	검역정책과 장재홍 과 장(☎044-201-2071) 홍기옥 사무관(☎044-201-2075)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 장(☎044-201-2331) 조재성 사무관(☎044-201-2332)

네덜란드·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·고시

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)는 '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(농식품부는 '수입위생조건', 이하 같다)'과 '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'을 오는 5월 3일 제정·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,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, 현지조사, 가축방역심의회('17.11.8.),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('17.11.21.)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*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

*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. 내장, 가공품,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,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,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

○ 이러한 네덜란드·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'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앞으로 도축장,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, 검역·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/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,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